

2015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KOREA CUSTOMS SERVICE



관세청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 차

해외여행자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01.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06
02.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불이행자 제재 강화	07
03. Tax-Refund 소요시간 단축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	08
04.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대금(수출) 수령절차 개선	09
05. 입국시 세관신고서 외국어 양식 확대	10
06. X-Ray 미검색 입국수화물 검사신청 전산화	11
07.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12

납세자 권리보호

01.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14
0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제도 신설	15
03.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제도 신설	16
04.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17
05. 관세조사 결과 과세처분 품질 제고	18

세정지원 (중소기업 분야)

01. 월별납부업체 대상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20
02. 성실 중소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21
03. 성실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완화	22
04. 중소 · 중견기업 특성별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운영	23
05. 자동 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 완화	24
06. 중소 · 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25

세정지원 (일반 분야)

01.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 간소화	27
02.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일괄 연장신청 기회부여	28
03. 환급세관 변경 신청절차 간소화	29
04. 환급서류 분할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30
05. 분할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자동입력 시스템 마련	31
06.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2
07. 사후관리 전자서류 제출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	33

세제 합리화

01. 고액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35
02.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	36
03.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배제요건 추가	37
04. 가산세 이자율 산정근거 변경	38
05. 관세 납세증명서 제도 도입	39
06. 통관질서 관리 등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확대	40
07. 외국세관과의 정보교환 근거 마련	41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

01. 수입신고 전자서류 제출 간소화	43
02. 화물 및 통관진행정보 제공 확대	44
03.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 실시	45
04.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판정기준 명료화 등 제도개선	46
05. 수입신고시 관세감면 및 협정세율 신청절차 개선	47
06.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세관 확대	48
07.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 단일화	49
08. 미통관 체납시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	50
09. 재수입면세 관세환급 조회권한을 변경된 관세사로 확대	51
10. 분석진행정보 ONE-STOP 알림시스템 구축	52

11. 수입물품 분석회보서 통지방법 개선	53
12. 화물 미반입으로 인한 신고각하 절차 간소화	54
13. 관세사 폐업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세관 확대	55
14. 新造 수출선박에 대한 승선신고 절차 간소화	56
15. 쌀 수입통관 절차 강화	57
16.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8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

01.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규정 마련	60
02.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신설	61
03.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준수도 관리근거 마련	62
04. 세관 공매 참여요건 완화로 공매시장 활성화	63
05. 自家用 보세창고 특허심사 절차 개선	64
06.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허용	65
07. Empty 컨테이너 적하목록 추가 제출 과태료 면제	66
08. 항공화물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효율화	67
09.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 보세운송수단 제한 완화	68
10. 반출통고 절차 개선으로 보세구역 운영인 부담 완화	69
1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통관제도 개선	70



01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해외여행자 세액 경감

특수통관 042-481-7831

현 행	개 선
<p>■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자 1인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 이하 〈신설〉 	<p>■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액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면세범위 초과물을 여행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경감(15만원 한도)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96조 개정) ※ 법 시행후 자진신고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관세법시행규칙 시행시 적용</p>

02

면세범위 초과물품 신고 불이행자 제재 강화

특수통관 042-481-7831

현 행	개 선
<p>■ 신고 불이행자 가산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의 30% 	<p>■ 가산세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신고 불이행자(2년내 2회 이상) : 납부할 세액의 60%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41조 개정) ※ 반복적인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는 관세법 시행령 시행시 적용</p>

기대효과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진신고 활성화

기대효과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유도

- 자진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율을 강화하여** **稅 부담 차등화로 성실신고 유도**

03

Tax-Refund 소요시간 단축으로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

특수통관 042-481-7831

현 행	개 선
<p>■ Tax-Refund 물품 반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반출확인 건에 대한 실시간 자료 처리 불가 – 반출확인 신청에서 승인까지 5분 소요 	<p>■ Tax-Refund 물품 반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반출확인 및 환급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간) 5분 → 40초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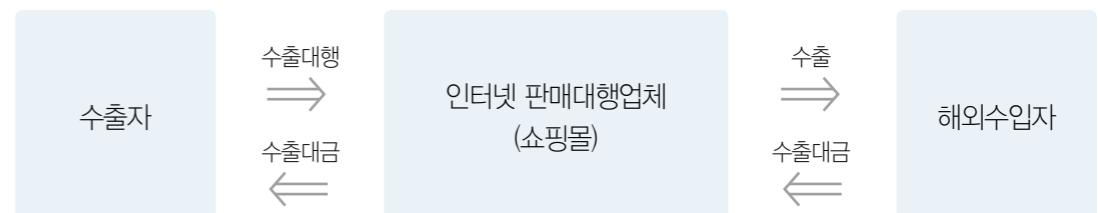
■ [시행일] 2014. 9월 (시스템 개선)

04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판매대금(수출) 수령절차 개선

외환조사 042-481-7931

현 행	개 선
<p>■ 제3자지급 신고의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판매대행업체(쇼핑몰)를 통해 해외에 판매한 수출물품 대금을 인터넷 판매대행업체를 거쳐서 수출자가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사항 	<p>■ 신고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지급 등 신고 예외로 규정 <p>■ [시행일] 2015. 1. 1. (외국환거래규정 개정)</p>



● 기대효과

외국인관광객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

● 기대효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업체(인터넷 역직구) 대금수령절차 간소화로 **수출활성화 지원**

05

입국시 세관신고서 외국어 양식 확대

특수통관 042-481-7831

현 행	개 선
-----	-----

■ 대한민국 입국시 세관신고서

- 13개 언어로 운영

■ 대한민국 입국시 세관신고서

- 이탈리아어 추가

■ [시행일] 2014. 9월 (인쇄 배포)

06

X-Ray 미검색 입국수하물 검사신청 전산화

특수통관 042-481-7831

현 행	개 선
-----	-----

■ X-Ray 미검 화물 세관검사 신청

- 신청서 서류 제출
- 수작업대장에 등록

■ X-Ray 미검 화물 세관검사 신청 및 결과 등록 전산화

■ [시행일] 2014. 11월 (시스템 개선)

● 기 대 효 과

외국어신고서 언어 확대로 외국인여행자 편의 증진

● 기 대 효 과

신속한 화물 통관지원 및 효율적 관리 가능

07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B/L 분할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 <신설> 	<p>■ B/L 분할 제외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B/L 분할된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p>*(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p> <p>*Bill of Lading : 선하증권</p> <p>■ [시행일] 2015. 1월 중 (고시 개정)</p>

● 기대 효과

전자상거래 물품 반입 급증에 따른 부정감면 방지

- 다수의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괄 구매하여 국내 반입 후 과세 또는 요건확인의 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이내로 B/L을 분할하여 개별화주 명의로 수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는 사례를 방지





01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심사정책 042-481-7871

현 행	개 선
<p>■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p>■ 관세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38조의3, 제38조의4 개정) 2015.1.1. 이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정청구분부터 적용</p>

0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제도 신설

세원심사 042-481-7642

현 행	개 선
<p>■ 품목분류 사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입을 하려는 자는 필요시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 • <신 설> 	<p>■ 재심절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품목분류의 변경 고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장은 사전심사한 품목분류 또는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 • 변경내용을 고시하고, 사전심사 분은 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 • <신 설>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86조, 제87조 개정)</p>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 보호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또는 기존 사전심사결과의 변경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강화
- WTO DDA 무역원활화 협정 부분* 타결(2013.12) 이행 준비
*무역원활화 협정 제3조에서 관세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등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재검토(Review) 기회보장제도의 구비를 의무화

참고 유사 사전심사제도

1. 관세기획 사전심사결과 재심사 절차(관세법 제37조 개정, 2015.1월 시행)
2. 원산지 사전확인결과 의의신청 절차(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2)
3. FTA원산지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 절차(FTA관세특례법 제14조)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 향상

-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신고납부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3년으로 규정되어 3년 경과한 과다납부세액의 구제방법 부재
- 현행 국세기본법도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5년으로 연장 추진



03

수입물품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제도 신설

법인심사 042-481-7656

현 행	개 선
<p>■ 과세가격 사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신고자가 과세가격 결정 관련 의문이 있는 경우 가격신고 전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요청 – 가산요소 또는 공제요소 – 거래가격 배제요건 – 특수관계자간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 가격 결정방법(ACVA)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30일내 재심사 신청 가능 	<p>■ 재심절차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37조 제3항 개정)

기대효과

납세자 권리 보호

-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재심사절차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강화
- WTO DDA 무역원활화 협정 부분* 타결(2013.12) 이행 준비

*무역원활화 협정 제3조에서 관세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등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재검토(Review) 기회보장제도의 구비를 의무화

참고 유사 사전심사제도

- 품목분류 사전심사 · 변경고시 재심사 절차 (관세법 제86조, 제87조 개정, 2015.1월 시행)
- 원산지 사전확인결과 의의신청 절차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2)
- FTA원산지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 절차 (FTA관세특례법 제14조)



04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법인심사 042-481-7656

현 행	개 선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시기 :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신청대상 :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 * 거래가격을 전통적 거래접근법으로 평가 	<p>■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 도입</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세, § 5)</th> <th>관세법 (§ 30 ~ § 35)</th> <th>비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전통적거래 접근법</td> <td>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td> <td>동종 · 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td> </tr> <tr> <td>재판매가격법</td> <td>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td> </tr> <tr> <td>원가가산법</td> <td>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td> </tr> <tr> <td rowspan="2">이익 접근법</td> <td>이익분할법</td> <td>산정가격방법</td> </tr> <tr> <td>거래순이익율법</td> <td>해당 없음</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방법 :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 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기재부장관에게 통보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37조의2 개정)</p> <p>※ 법 시행후 조정 신청 · 방법 · 절차 등을 정하는 관세법시행규칙 시행시 적용</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세, § 5)	관세법 (§ 30 ~ § 35)	비교	전통적거래 접근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동종 · 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	재판매가격법	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	원가가산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이익 접근법	이익분할법	산정가격방법	거래순이익율법	해당 없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내국세, § 5)	관세법 (§ 30 ~ § 35)	비교														
전통적거래 접근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동종 · 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														
	재판매가격법	유사 수입물품 거래가격														
	원가가산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이익 접근법	이익분할법	산정가격방법														
	거래순이익율법	해당 없음														

기대효과

납세자 불편 해소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내국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조정 · 결정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활성화에 기여
- ACVA와 APA* 안정성을 높여 제도의 활용도 증가 기대

*(Advance Pricing Agreement) 일정기간에 걸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국세청과 납세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



05

관세조사 결과 과세처분 품질제고

(관세조사)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탈루를 포함한 통관요건의 적정성을 업체별로 확인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110조의3에 따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음

법인심사 042-481-7981

현 행	개 선
■ 본부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 위원회 운영시 납세자 권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구성) 위원 25인 이내 • (납세자 의견진술) 위원장이 필요시 조사 대상자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구성) 불복 및 소송담당자를 당연직으로 참여 • (의견진술 의무화) 의견 진술기회 부여
■ <신 설>	■ 관세조사 과세처분 세관장 평가
■ 조사업체 모니터링 절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조사 과정 모니터링 강화 ■ [시행일] 2015. 3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불법행위 상시점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 모니터링을 위한 「관세행정 통합민원 센터」 운영

기대 효과

과세처분 품질제고를 통한 납세순응도 향상

- 관세조사결과 과세처분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관세불복 최소화
- 불복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과 관세행정 신뢰도 저하 방지



01

월별납부업체 대상 확대로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

(월별납부업체)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

세원심사 042-481-7871

현 행	개 선
<p>■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최근 2년간 관세 등 체납이 없는 자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p>〈단서 신설〉</p>	<p>■ 중소기업 대상 지정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p>단,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p>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개정)

02

성실 중소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법인심사 042-481-7981

현 행	개 선
<p>■ 관세조사시 기업 규모 미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방문심사 원칙) 전체 정기 관세조사 대상 업체 <p>〈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조사기간 20일) 전체 정기 관세조사 대상업체 <p>〈단서 신설〉</p>	<p>■ 성실 중소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p>단, 성실 중소기업은 無방문 서면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p>단, 성실 중소기업은 10일</p>

■ [시행일] 2014. 9월 (훈령 개정)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지원

기대효과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 완화



03

성실 화물운송주선업자 AEO 공인기준 완화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심사정책 042-481-7865

현 행	개 선
-----	-----

■ AEO 공인기준(재무 건전성)

- 기업규모 : 연평균 업무실적

(단위: 건 이상)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포워더
수출 50 (중소 25)	수입 50	수출입 1,000	HBL 1,000
보세운송 · 구역	선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 반입 1,500	MBL 5,000	MBL 10,000	하역 1,500

- 재정건전성

■ AEO 공인기준(재무건전성)

- <삭 제>

- (좌 동)

■ [시행일] 2014. 9월 (고시 개정)

04

중소 · 중견기업 특성별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운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특성에 맞춘 관세조사 부담 완화 대책

법인심사 042-481-7981

현 행	개 선
-----	-----

■ 다양한 관세조사 면제 프로그램 부재

■ 중소 · 중견기업 특성별 관세조사 면제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성실기업) 정기 관세조사 면제

- (최근 2년간 수출입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성실 영세기업) 원칙적 관세조사 면제

단,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 등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

■ [시행일] 2015. 1월

● 기대 효과

성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업무실적이 적지만 성실한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기대 효과

성실 중소 · 중견기업 관세조사 부담 완화

-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대상 선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



05

자동 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심사주기 완화

(자동 간이환급)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물품 수출신고 시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함으로써 환급신청을 대체하는 제도

세원심사 042-481-7875

현 행	개 선
<p>■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회 이상 심사 • <신 설> 	<p>■ 성실기업 환급실태 심사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후 1차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이상 심사 • 2차년도부터는 부당환급 우려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2년 1회 심사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개정)

기대 효과

성실 수출기업 정기심사 부담 완화

- 정기심사 대응 관련 259개 자동간이 환급업체의 인건비 절감
- 심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행정 효율화 도모

06

중소 · 중견기업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허용

수출입물류 042-481-7821

현 행	개 선
<p>■ 보세판매장 특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 만료시 자동갱신이 아닌 신규특허 절차를 적용 • <신 설> 	<p>■ 중소 · 중견기업 보세판매장의 특허 연장기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중소 · 중견 보세판매장에 한해 갱신 허용* <p>* 시행령 개정 : 1회 갱신(최대 5년)</p>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176조의2 개정)
※ 관세법시행령 시행시 적용

기대 효과

중소 · 중견기업 지원 강화

- 보세판매장 사업 초기 막대한 시설비용 및 운영비용 소요를 감안
- 대기업에 비해 제반 여건이 열악한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지원



01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 서류 간소화

FTA기획 042-481-321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협정관세 신청시 제출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정신청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입신고필증 사본 4. 원산지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관세 신청서류 중 일부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좌 동) 2. (좌 동) 3. 수입신고필증 제출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4. (좌 동)

■ [시행일] 2014. 11월 (FTA 특례고시 제35조 개정)

● 기대효과

FTA 활용기업 비용 절감

- 협정관세 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수입신고필증 사본을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보유중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갈음

02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일괄 연장신청 기회 부여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

FTA기획 042-481-3211

현 행	개 선
-----	-----

■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기간 연장

- (방법1) 차수별로 각각 연장신청
- (방법2) 6월내 만료되는 차수 일괄 연장신청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기간은 2년

■ 인증 받은 모든 차수 일괄 연장 신청제도입

- (좌 동)
- (방법2) 모든 차수 일괄 연장신청

※업체 희망에 따라 선택

■ [시행일] 2015. 1월 (인증수출자 운영고시 제13조 개정)

03

환급세관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

세원심사 042-481-7875

현 행	개 선
-----	-----

■ 환급신청세관 변경 신청시

- 변경전 세관장의 승인 필요
- <추 가>

※변경 전 세관 방문 → 변경신청서류 제출 및 승인 → 변경 후 세관 방문 → 환급신청 가능

■ 환급신청세관 변경 신청 개선

- (좌 동)
- 변경할 세관장도 승인 가능

※변경 전 세관 방문없이 변경후 세관에 변경 신청과 환급신청 동시에 가능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개정)

● 기대효과

FTA 활용기업 비용 절감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 연장횟수 단축으로 시간 및 비용 절감

● 기대효과

환급금 지급 지원요소 제거로 민원편익 증대

- 변경할 관할지세관장에게 변경신청 허용에 따른 업체 비용 절감

※연간 1,860건 변경신청 비용 절감 예상



04

환급서류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분할증명서) 수입원재료를 다른 수출물품 제조업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세원심사 042-481-7875

현 행	개 선
-----	-----

■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과 납부 세액을 확인할 서류
- <단서 신설>

■ 분할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좌 동)
-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개정)

05

분할증명서 발급시 원산지 자동입력 시스템 마련

세원심사 042-481-7875

현 행	개 선
-----	-----

■ 분할증명서 발급

- <신 설>

■ 분할증명서 발급

- 분할증명서 신청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가 자동입력 되도록 개선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개정)
2014. 12월 (시스템 개선)

● 기대 효과

제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 수입신고필증 등 근거서류 출력에 따른 업체비용 절감
- 서류제출로 선별되는 연 평균 47,000건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예상

● 기대 효과

과세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로 민원편의 제고

- 원상태 수출에 따른 환급신청시 여러 단계의 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을 제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및 인력 낭비 방지
- 환급 신청인의 불편 및 세관 심사자의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행정 오류 감소로 업무 효율성 제고



06

사후관리 프로세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세원심사 042-481-7642

현 행	개 선
<p>■ 사후관리대상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 수입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사후관리 지정 	<p>■ 사후관리대상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제〉 ※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p>■ 사후관리 선별 시 생략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물품·동일업체에 한하여 「현지확인」에서 「서면확인」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생략은 불가 	<p>■ 사후관리 선별 시 생략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업체를 반복 확인(최근 6개월, 3회 이상)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관리 확인 생략 가능
<p>■ [시행일] 2014. 11월 (훈령 개정)</p>	

07

사후관리 전자서류 제출 활성화를 통한 비용 절감

세원심사 042-481-7642

현 행	개 선
<p>■ 사후관리자료 전자통관시스템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의 세부내역(품명, 규격, 수량 등)을 수작업으로 입력 	<p>■ 수입신고 관련자료 입력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번호 입력 시 관련 자료가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개선
<p>■ [시행일] 2014. 11월 (시스템 개선)</p>	

기대효과

사후관리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관세행정부담 경감**

기대효과

사후관리 전자서류 제출 활성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



01

고액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세원심사 042-481-787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한 징수권 소멸시효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채권* 규모에 따라 소멸시효 차등화 * 관세 및 내국세 포함 • 5억원 이상 : 10년 • 5억원 미만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2조 제1항 개정)

기 대 효 과

- 고액 관세채권의 철저한 징수로 과세형평성 제고
- 「국세기본법」과 일관성 유지

※ 5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2013년)



02

밀수출입죄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

조사총괄 042-481-7913

현 행	개 선
<p>■ 밀수출입죄 법정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p>■ 법정형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금지물품을 밀수출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69조 개정)

03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배제요건 추가

기획심사 042-481-7881

현 행	개 선
<p>■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만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판매가격에서 아래 비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판매수수료 · 이윤 · 일반경비 국내 운임 · 보험 · 각종비용 조세 · 공과금 · 부가가치 〈신 설〉 	<p>■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배제 요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국내판매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 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 가능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33조 개정)

개정이유

- 타 범칙과의 형량비례를 고려
- 밀수출입죄의 경우 **타 범칙과의 형량비례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
 - 대체로 다른 범칙들이 **징역형과 벌금수준을 1년에 1천만원 기준으로 책정함을 감안하여 조정**

기대효과

-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에 대해서도 가격의 배제요건을 추가하여 농산물 등 지속되는 저가신고를 차단하는 장치* 마련
 - *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기초 과세가격 결정) 및 동법 제32조(유사물품 기초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배제요건을 기 신설 (2013.1)



04

가산세 이자율 산정 근거 변경

세원심사 042-481-787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이 부족세액 징수시 함께 부과하는 '가산세' 징수시 적용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국세기본법)와 일치하도록 적용 이자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연체 대출금 이자율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42조 개정)
 ※ 법 시행후 이자율을 정하는 관세법시행령 시행시 적용

05

관세 납세증명서 제도 도입

세원심사 042-481-787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 지자체 등에게 대금지급을 받을 시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 시 ■ 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증명서 발급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116조의3 신설) ※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관세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시행시 적용

개정 이유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

- 현행 내국세와 관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자율 일치
- 가산세는 신고 · 납부불성실에 대한 제재성격으로, 관세 · 내국세의 제재수준이 다를 이유가 없음에 따라 내국세와 일치
 - *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등)도 제재적 성격의 제도임을 감안하여 일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 중

개정 이유

체납자 관리 등 성실납세 유도

- 기 시행중인 내국세 및 지방세와 제도 운영 동일화
- 관세 체납자의 공공기관 대금 영수를 제한





06

통관질서 관리 등에 필요한 과세자료 범위 확대

외환조사 042-481-7931

현 행	개 선
<p>■ 과세자료의 범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설> 	<p>■ 과세자료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보험금여 등의 지급현황 추가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64조의3 개정) ※ 자료 제출기관 및 시기 등을 규정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시 적용</p>

기대효과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방지

- 수출입 가격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등 부당 편취가 발생하는 분야의 자료를 과세자료로 추가하여 관리



07

외국세관과의 정보교환 근거 마련

국제협력 042-481-7979

현 행	개 선
<p>■ 외국세관과의 정보교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CO*에서 정한 수출입 신고항목과 화물 식별번호 교환 	<p>■ 정보교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세관상호지원 협정) 및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 교환*</p> <p>* 외국 정보제공시 신고인에게 통지</p> <p>■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40조의6 신설) ※ 구체적 사항을 규정할 관세법시행령 시행시 적용</p>

기대효과

무역 2조달러 시대 진입을 대비한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

-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 가능
-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주요 선진국의 국제적 세관자료교환 추세를 감안



01

수입신고 전자서류 제출 간소화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수입신고서의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파일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란별 구분 없이 일체를 한번만 첨부하도록 개선<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무역서류 명칭 클릭

■ [시행일] 2014. 10월 (시스템 개선)

● 기 대 효 과

전자첨부서류 제출업무 간소화로 신속통관에 기여

02

화물 및 통관진행정보 제공 확대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화물 및 통관진행정보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제출, 화물반입, 수입신고, 보수 작업결과, 화물반출 등 정보 제공 • <신 설> 	<p>■ 제공되는 정보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입자 보완요구사항, 상표권 관련 정보 등 <p>■ [시행일] 2014. 10월 (시스템 개선)</p>

03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이력관리 실시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기능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행 필증인지 여부, 정정후 필증인지 여부 등 확인 곤란 <p>※ 수입신고 정정 등에 따라 신고 내역이 변경될 경우 진위여부 파악 곤란</p>	<p>■ 수입신고필증 발행 등 이력관리 기능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증 발행 이력관리, 신고정정된 경우 정정 이력관리 포함 <p>※ 신고필증 발행시점의 진위여부 파악 가능</p>

● 기대효과

수입화물 통관지체 사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

● 기대효과

신고필증의 위변조 방지 및 행정효율 제고



04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판정기준 명료화 등 제도개선

특수통관 042-481-7832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명확한 「원산지운영고시」 원산지 표시 판정기준* 내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별표 6>에서 <별표 9> • 위반행위별 판정례 또한 실무상 적용에 논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 고시 <별표 6>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례 中 “인도네시아 제품에 「Brand by Korea」 라고만 표시” 된 경우 ⇒ 미표시로도 판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에 각 위반행위별로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별 판정례를 간소화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 대폭 개정 ■ [시행일] 2015. 1월 중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특정국가*에서 반입되는 원산지미표시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토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국가, 기타 국가(싱가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가 미표시된 물품의 선적국을 특정하여 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규제 개선 필요 ■ [시행일] 2015. 1월 중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 방법 인정 (개정안 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untry of Origin : 국명' 표시 추가 ■ [시행일] 2015. 1월 중 (고시 개정)

기대효과

원산지 관련 논쟁의 여지 및 관련 민원 마찰 감소

05

수입신고시 관세감면 및 협정세율 신청절차 개선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감면 및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 접수이후에만 전송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전송에 따른 통관지체 발생 ■ 신청시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와 동시에 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2014. 10월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업무절차 간소화로 시간 및 비용 절감

06

재수출기간 연장 승인세관 확대

통관기획 042-481-7841

현 행	개 선
<p>■ 재수출면세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연장 승인하는 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수입지세관만 허용 <p>※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수입지 세관 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 연장승인이 가능하나 정해진 물품이 없음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단서)</p> <p>• <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지세관외 세관의 재수출기간연장 승인대상물품* 지정 <p>* 수출입물품의 포장용기</p>	<p>■ 연장승인 세관 확대</p> <p>■ [시행일] 2014. 12월 (고시 개정)</p>

07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 단일화

법인심사 042-481-7656

현 행	개 선
<p>■ 확정가격 연장 신청시 (통관지가 둘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지 세관별 처리에 따라 연장기간이 상이한 경우 발생 <p>※ 확정가격 신고의 경우는 통관지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세관에 확정신고할 수 있음</p>	<p>■ 하나의 세관에 일괄신청 및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신청이 가능한 세관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서 일괄처리 – 일괄 처리한 세관은 다른 세관에 연장 기간 등 결정사항 통보 <p>■ [시행일] 2014. 8월 (지침 시행)</p>

● 기대효과

비용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 민원인이 최초 수입지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청하는 불편 해소

* (평택세관) 재수출기간 연장 우편접수건 : 2012년(430건), 2013년(606건)
- 비용절감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 만족도 향상

● 기대효과

확정가격 연장 신청시 수입업체 불편사항 제거



08

미통관 체납시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

(미통관 체납)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세고지를 받은 후 신고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된 경우

세원심사 042-481-7871

현 행	개 선
<p>■ 미통관 체납시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통관 체납업체가 차후 수입신고時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p>■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통관 체납업체가 차후 수입신고時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제외

■ [시행일] 2014. 7월 (고시 개정)



09

재수입면세 관세환급 조회권한을 변경된 관세사로 확대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재수입면세 신청시 관세환급 여부 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수입신고한 관세사만 조회 가능 ※ 화주가 관세사 변경시 변경된 관세사의 정보 조회 불가 <p>• <신 설></p>	<p>■ 관세환급여부 조회 관세사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변경된 관세사도 조회 가능

■ [시행일] 2014. 10월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신속 통관 지원 및 업무효율성 제고

- 미통관 체납시 사전세액심사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통관 구현
- 세관의 통관허용 여부 확인절차(통관부서→체납부서) 생략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효과

재수입 관세감면 업무시 불편함 해소

10

분석진행정보 ONE-STOP 알림시스템 구축

세원심사 042-481-7642

현 행	개 선
<p>■ 분석진행정보 민원인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심사부서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자료보완 및 지연 통보 	<p>■ 절차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실에서 직접 신고인에게 자료보완 및 지연 통보

■ [시행일] 2014. 7월 (시스템 개선)

11

수입물품 분석회보서 통지 방법 개선

세원심사 042-481-7642

현 행	개 선
<p>■ 분석결과 민원인 회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원이 FAX 전송 CRM* 고객인 경우, E-mail 통지 <p>*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시스템)</p>	<p>■ 분석결과 회보 방식 전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좌 동〉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 가능 <p>※ 전자통관시스템 「분석진행사항」에서 조회 및 출력</p>

■ [시행일] 2014. 7월 (시스템 개선)

기대효과

자료보완요구 및 지연통보를 직접 신고인(화주)에게 알림으로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와 정확한 내용 전달 제공

기대효과

신고인(관세사·화주)과 납세심사직원 상호 간의 심사결과서 요청과 FAX 전송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련 경비* 절약

*분석 2만건으로 계산시, FAX 전송 소요시간 3,333시간, 직원 및 관세사 관련 경비 약 8천만원 절약 효과

12

화물 미반입으로 인한 신고각하 절차 간소화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수입신고 각하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하며, 본청에 요청하여 처리 본청 전산처리요청 등에 따른 처리지체 발생 	<p>■ 수입화물 미반입 건 수입신고 각하처리시 세관 처리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항전 또는 출항전 수입신고건에 대해 화물 미반입으로 신고각하 처리시 세관에서도 직접처리 가능

■ [시행일] 2014. 10월 (시스템 개선)

13

관세사 폐업으로 인한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세관 확대

통관기획 042-481-7841

현 행	개 선
<p>■ 수출신고필증 재교부 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관지 세관 〈신설〉 	<p>■ 재교부 가능세관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관할지 세관

■ [시행일] 2014. 11월 (지침 시행)

● 기대효과

신고각하 업무 신속처리 가능

● 기대효과

민원인 불편 해소

통관지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필증 재교부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14

新造 수출선박에 대한 승선신고 절차 완화

신조 선박은 제작 완료되어 수출신고수리가 된 이후에도 선주의 요청에 따른 마무리 점검 등을 위해 승선 필요 (출항시까지 약10일 내외 소요)

국경감시 042-481-7936

현 행	개 선
<p>■ 수출신조선박(외국무역선) 승선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선시마다 사전 승선신고 	<p>■ 수출신조선박 일괄 승선신고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제조회사 명의로 최초 출항시까지 선박별로 1회만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신고 가능

■ [시행일] 2014. 12월 (고시 개정)

15

쌀 수입통관 절차 강화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p>■ <신 설></p>	<p>■ 수입 쌀의 통관지세관을 9개 세관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세관 <p>■ 쌀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추가</p>

■ [시행일] 2015. 1월 중 (고시 개정)

기대효과

약 0.1억원 업체 경비 절감

- 0.1억원 = 200건(신조선박 연간 승선건수) × 50%* × 92,000**
- *일괄 승선신고로 인한 승선신고 감소 비율(추산)
- ** 20,000원(세관 방문 교통비) + 72,000원(업체 인건비, 4시간 기준, 18,000원/시간)

기대효과

수입 쌀의 저가신고 방지

-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하여 저가신고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통관지세관 직원들의 통관심사 경험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리 강화

16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통관기획 042-481-7851

현 행	개 선
■〈신 설〉	<p>■ 「담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지방세관리시스템」을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자료 교환을 통해 면세담배 유통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p>*제조 → 반출 → 수출 → 적재</p>
	<p>■ [시행일] 2015. 1월 (고시 개정)</p>

● 기대 효과

국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면세담배 불법 유통 방지

- 관세청의 수출·선적자료와 행정자치부의 담배 제조·반출정보를 연계하여 수출 및 선용품용 면세담배의 불법유통 사전차단



01

특허보세구역 특허취소 사유 확대 및 처벌규정 마련

수출입물류 042-481-7637

현 행	개 선
■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사유	■ 특허 취소사유 추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좌 동)
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3. 1년 내 3회 이상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 이상 물품 반입실적이 없어서 특허보세구역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5. 〈신 설〉	5.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허위신고죄 등 처벌	■ 처벌규정 추가
• 〈신 설〉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177조의2 신설, 동법 제276조 개정)

● 개정 이유

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 명의대여를 통한 특허보세구역의 부정운영 금지
- 부정하게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02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신설

수출입물류 042-481-7904

현 행	개 선
■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제재	■ 제재방안 추가
• 등록취소 or 업무정지(6개월 내)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보세운송업자등이 보세운송업 등 업무 관련 명령 위반 시 등	• (좌 동)
• 〈신 설〉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 *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24조 개정)
※ 과징금 산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관세법시행령 시행시 적용

● 기대 효과

제재방법 다양화로 정책효과 제고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업체의 지속적 경제활동이 가능

03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준수도 관리근거 마련

수출입물류 042-481-7825

현 행	개 선
-----	-----

■〈신 설〉

■법규준수도 측정 및 활용

- 관세행정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법령 등 법규준수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활용
-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 법규준수도의 측정방법, 평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행일] 2015. 1. 1. (관세법 제255조의2 개정)
※세부 운영사항을 정하는 관세법시행령 시행시 적용

04

세관 공매 참여요건 완화로 공매시장 활성화

수출입물류 042-481-7637

현 행	개 선
-----	-----

■세관체화공매 입찰 참가자격

- 매각공고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한정

■세관체화공매 입찰 참가자격

- 〈삭제〉

■[시행일] 2014. 7월 (지침 시행)

● 기대효과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 마련

- 관세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고 활용하는 국제적 추세* 감안

*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이행지침 6.2.3) 관세당국은 정기적인 법규준수도 측정을 통해서 위험관리시스템을 평가 및 재검토하여야 함

● 기대효과

- 입찰참가자격 요건완화로 세관 체화공매 활성화 및 신속처분
- 관행적인 사업자등록증 구비여부 확인업무 폐지로 업무효율성 증대



05

自家用 보세창고 특허심사 절차 개선

수출입물류 042-481-7637

현 행	개 선
<p>■ 자가용 보세창고 신규 특허(최초 갱신)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p>■ 특허심사 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 가공용 원재료를 보관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해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 자체심사로 특허 결정

■ [시행일] 2014. 12월 (고시 개정)



06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에 대해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허용

(일괄발급)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업체는 보세공장 등에 일정기간(1일~15일, 16일~말일) 반복 공급한 물품에 대해 일괄(월 2회) 반입확인서를 발급

세원심사 042-481-7875

현 행	개 선
<p>■ 동일한 보세공장 등에 반복 공급하는 수출 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업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 〈신 설〉 	<p>■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신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좌 동)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 [시행일] 2014. 11월 (고시 시행)

기대효과

自家用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제조업 지원 확대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기업체 수출용원재료 반입절차 간소화

07

Empty 컨테이너 적하목록 추가 제출 과태료 면제

수출입물류 042-481-7904

현 행	개 선
<p>■ 虚空 컨테이너 적하목록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 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당해물품 하선 전까지 적하목록 제출 가능 	<p>■ 적하목록 제출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역계획변경 등으로 공 컨테이너 추가 하선이 필요한 경우 – 야간 · 공휴일 하역 등 세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선 후 첫 근무일까지 적하목록 제출 가능

■ [시행일] 2014. 9월 (고시 시행)

08

항공화물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운영 효율화

수출입물류 042-481-7904

현 행	개 선
<p>■ 항공 수입적하목록 작성 ·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해외 포워더 작성 및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적하목록 수정 불가 <p>■ 적하목록제출과 하기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 제출과 별도로 항공사가 하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기신고 절차 이행 	<p>■ 적하목록 일부수정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다만, 일부(품명 등) 항목에 대한 국내 포워더의 적하목록 사전 오류검증 허용 <p>■ 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하목록과 하기신고 동시 전송

■ [시행일] 2015. 2월 중 (시스템 개선)

● 기대효과

- 선사의 필요에 따라 각 항만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공컨테이너 초과수요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여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공 컨테이너에 대한 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제출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부담 완화**

● 기대효과

- 적하목록 정확도 향상에 따른 **과태료 부담 완화**로 **중소물류업체 지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 입항전 적하목록 마감제출과 하기신고가 동시 가능하여 조업대기기간 단축 → **물류경쟁력 강화**

09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 보세운송수단 제한 완화

수출입물류 042-481-7904

현 행	개 선
<p>■ 하선장소가 부두밖 보세구역인 경우 이동 운송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신 설〉 	<p>■ 운송수단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관장 사전 승인하에 일반업체 운송 차량으로 운송 가능

■ [시행일] 2014. 9월 (고시 시행)

10

반출통고 절차 개선으로 보세구역 운영인 부담 완화

(반출통고) 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및 운영인은 장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화주등에게
반출통고서를 발송

수출입물류 042-481-7637

현 행	개 선
<p>■ 반출통고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편등기 발송 〈신 설〉 	<p>■ 반출통고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공인전자우편(샵메일)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전자우편(샵메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 송수신 효력이 인정

■ [시행일] 2014. 9월 (지침 시행)

● 기대 효과

- 하선신고에 의한 특수화물의 보세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과 같이 **임차보세운송제도를 도입**
- 관내 하역 운송차량 공백 해소로 물류흐름 최적화 등 **민원편의 도모**

● 기대 효과

- 반출통고 **비용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 *2013년도 부산항 터미널(11곳) 반출통고 비용(등기우편료, 터미널측 추산) ⇒ 3,300만원

11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통관제도 개선

수출입물류 042-481-7821

현 행	개 선
<p>■ 보세판매장 물품 통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요건 입력(필수) 	<p>■ 수입요건 입력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요건 입력(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확인에 대한 통관간소화
<p>■ 보세판매장 물품 보세운송 용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만 가능 • <신 설> 	<p>■ 물품 특성에 따른 특수용기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특수박스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p>■ [시행일] 2014. 8월 (시스템 개선)</p>	

● 기대 효과

통관절차 간소화 및 화물 안전성 제고

- 통관간소화에 따른 시간, 인력 등 절감 : 연간 5천시간
 - * 요건대상 반입검사신청 (일 66.3건*365일=24,228건 80%) 19,382건 X 15분 (절감시간) = 290,730분
- 특수 박스를 사용하여 상품운송의 안정성 제고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 행 처 관 세 청

발 행 인 관 세 청 장 김 낙 회

기획 및 편집 기 획 조 정 관 이 돈 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한 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 강 식, 김 영 순
